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교육명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교육안내

교육대상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주기	구분	이수시기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흐름도	집합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2일(14시간) 참석 → 수료		
	사이버	※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교육기간 : 14일[휴일포함]) → 수료(교육기간 종료 후 2일 뒤)		
교육시간	※ 2일 (14시간) / 세부 구성은 시간표 참고			
대기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비고
	1종	80톤 이상/년	· 대기환경기사 1인	
	2종	20-80톤/년	·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3종	10-20톤/년	· 대기환경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3년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4종	2-10톤 미만/년	·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일반보일러만 설치			
	먼지만 발생 사업장			

접수안내

회원가입	① 홈페이지(https://www.keciedu.or.kr) 접속 → 회원가입 → 약관동의 ② 실명(본인)인증 : 인증수단(핸드폰, I-PIN 등) 중 선택하여 진행 ③ 회원정보 입력 → 가입 완료 ※ 회원가입 하는 본인 정보만 입력(사업장 정보는 교육 신청 시 입력)
교육신청	① 로그인 → 교육 신청 →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② 교육과정 선택 → 세부 교육과정 선택 ③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④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⑤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72,000원 (중식 불포함) * 납부방법 ① 카드결제 (카드영수증만 발급 가능/현금영수증, 계산서 발급 불가) ② 가상계좌 입금 (영수증, 계산서 발급 가능)
준비사항 (집합교육시)	* 교육 참석자(신청자) 신분증(필수)

기타사항

결제 및 환불 안내	①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발급은 <u>교육신청 절차 내에서</u> 가능합니다(사전 입금 불가) ※ 카드 결제 시 계산서 중복발행 불가 ※ 가상계좌 결제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 가능 ② 가상계좌 입금은 교육신청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u>7일 이내(주말포함) 입금</u> 하여야 하며, <u>기한 내 미입금 시 발급된 계좌는 말소되고 교육신청은 취소됩니다.</u> ※ <u>교육수수료 미입금 시 교육 수강 불가</u> ※ 교육 시작일 이후 입금 시 교육 기간 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u>(사이버교육 수강만 해당 / 교육 기간 연장은 불가)</u> ③ 환불규정에 따라 “취소신청”은 신청한 교육의 시작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취소신청(환불)은 불가합니다. ④ “연기신청”은 “취소신청” 기간과 <u>같은 기간 내에 1회만 차기 교육으로 연기가 가능</u> 하며, 교육 <u>이월 이후 해당 교육기간 종료 시 취소, 환불, 재연기는 불가</u> 합니다.
수강 안내	① 대리참석(수강)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u>신청한 본인이 참석(수강)</u> 하시기 바랍니다. ※ <u>대리출석(수강) 및 교육장 무단이탈 적발 시, 교육은 미이수 처리되며 교육수수료 환불이 불가</u> 합니다. ② 교육 시작 후 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u>신청 시간을 준수</u> 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차시설은 교육장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내 ' <u>교육안내 > 교육장 안내</u> ' 메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①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1577-7389) 또는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의 일반대기(2일)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1	2	3	4	5	6	7	8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1일차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중 식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I, II)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악취 및 VOCs 처리기술
2일차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중 식	탄소중립 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기배출원조사 및 SEMS 소개	행정실무 (배출부과금과 행정처분)	자원순환과 에너지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교육시간표(사이버)

※ 1차시 당 60분 내외

차시	과목명
1	교육과정 및 수강안내
2	대기환경보전법령 내용(1)
3	대기환경보전법령 내용(2)
4	대기환경보전법령 내용(3)
5	배출부과금과 행정처분
6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가이드
7	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 자가측정
8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 특성
9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처리기술
10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기술
11	방지시설 운영관리기술(1),(2)
12	자원순환과 처리기술 및 재생에너지 분류·특성
13	미세먼지의 분류·특성 및 저감방안
14	비산배출 저감제도의 개요 및 시설관리기준
15	탄소중립대응
16	사고 시의 조치방법 및 현장 사례(1)
17	사고 시의 조치방법 및 현장 사례(2)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 14.,

2025. 10. 1.>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0. 1.>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비고 :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부.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60	80	100

비고: 위 표 모독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